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3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단축 등	3
2. 전공의 인력기준	9
3.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 비용 지원	17
4. 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및 이동수련 조치 사유 추가	21
5. 협력수련체계	29
6.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32
7. 전공의 수련교육원	36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 윤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3. 20

(3) 회 부 일 : 2026. 3.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를 뒷받침할 수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사전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당 80시간까지 수련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 수련에 노출되어 있고 전공의가 학습자라기보다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전공의의 건강권·수련권 침해와 환자 안전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며 ‘수련의 질을 담보하는 구조적 개편’의 선행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으려 함. 또한,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에 반영하고, 지도전문의 제도와 협력수련체계·전임의 수련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치하여 수련과정 개발·평가와 인력 교육·연수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수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향상하고 필수·지역의료 수련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제8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등).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에서는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할 수 없고(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 연속하여 24시간(응급상황 시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2024년 2월 및 2025년 12월 개정된 것으로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과거 전공의 수련시간 한도를 1주일에 80시간, 연속하여 36시간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었으나,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1주일에 80시간, 연속하여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이후 2025년 12월 개정에서 4주 기간 평균 계산 시 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28시간)으로 단축하였음.

< 제7조 개정 연혁 >

2026.2.21. 이전	법률 제20330호 (2024.2월 개정, 2026.2.21. 시행)	현행 (2025.12월 개정, 2026.2.21. 시행)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

2026.2.21. 이전	법률 제20330호 (2024.2월 개정, 2026.2.21. 시행)	현행 (2025.12월 개정, 2026.2.21. 시행)
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u>36시간</u>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u>40시간</u>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u>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u>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u>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u>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u>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u>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 2024년 2월 개정은 3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형식으로 의결되었는데, 이 중 최혜영의원안(의안번호 제2122005호)은 1주 평균 수련시간 및 연속수련시간을 각각 68시간 및 24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하였고, 신현영의원안(의안번호 제2120594호)은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률상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음.

- 또한, 2025년 12월 개정은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형식으

로 의결되었는데, 이 중 김윤의원안(의안번호 제2207294호)과 박주민의원안(의안번호 제2210085호)은 1주 평균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을 각각 60시간 및 24시간으로,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제2212077호)은 60시간 및 16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하였고, 서명옥의원안(의안번호 제2208764호)은 수련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되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주 평균 수련시간은 법률상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은 24시간(응급상황 시 2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음.

- 참고로, 2024년 2월 개정 전 조항은 정부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성·운영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수련환경개선TF)¹⁾의 합의 내용을 2015년 법 제정 당시에 반영한 것임.

< 수련환경개선TF에서 합의한 주요 개선 사항 >

주요개선 항목 및 기준	
① 최대연속 수련시간	▶ 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② 응급실 수련시간	▶ 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③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 10시간
④ 휴일	▶ 월평균 주당 1일(24시간)
⑤ 주당 최대 수련시간	▶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등
⑥ 당직일수	▶ 주3일 초과 금지
⑦ 휴가	▶ 연가 14일
⑧ 당직수당	▶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1) 보건의료정책관(주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및 임원), 전공의(수련과목이 서로 다른 전공의), 대한의학회(수련교육위원), 대한병원협회(평가수련이사), 대한의사협회(학술이사)로 구성

그러나 코로나19의 유행을 거치면서 의료인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전공의 단체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²⁾ 상기 기술한 개정이 이루어졌음.

- 지금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수련시간을 단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개정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법률상 상한을 단축하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전공의의 적정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도의 누적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충분한 의료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등 전공의 근로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진료공백이나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병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2025년 12월 개정 과정에서 1주 평균 수련시간의 상한은 유지하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편 박차...전공의 근로환경 등 개선 초점”, 대한전공의협의회 보도자료, 2022.9.21.

- 둘째, 개정안과 같이 수련시간 상한을 단축할 경우 현재에 비하여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총 수련시간이 축소될 것인바,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충분한 수련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주당 수련시간 단축은 전공의, 수련병원, 의학교육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후속 시범사업과 중장기적 평가를 토대로 현장 의견수렴 및 수련 질 유지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단순한 수련시간 감축이 아닌 비교육 업무 분리, 역량기반 평가 등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고, 전문과목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학회) 수련을 ‘근로시간 규제’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수련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범사업 등의 충분한 효과 검증·영향평가 후 역량 중심 개편과 연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대한병원협회) 의료서비스 제공 및 수련 질 고려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근 시행된 연속 수련시간 단축 등 제도 변화 적응,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판단 필요
-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본적으로 찬성함. 다만 수련교과과정의 세밀한 설계 지원 병행 등 일부 보완 필요

2. 전공의 인력기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련병원등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상한기준과 전공의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준수 여부를 수련환경평가의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전공의 인력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6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등에서 전공의가 제7조에 따라 수련할 수 있도록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상한기준(이하 “환자 수 상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전공의 인력기준(이하 “인력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전공의 담당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별 특성 3. 전공의의 수련단계별 수련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련병원등은 제1항에 따른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 제2126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③ 수련병원등은 인력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전공의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자 수 상한기준 및 인력기준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의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26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 ----- ----- ----- ---. 1. 제7조의2에 따른 환자 수 상한기준 및 인력기준의 준수 여부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의료법」 제36조제5호³⁾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3)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원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⁴⁾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의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로,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령상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 기준은 1973년 「의료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되면서 정해진 이후 52년간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⁵⁾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5) 「의료법」 [시행 1973. 8. 17.]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제32조 (시설기준 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규격·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 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 1973. 9. 20., 전부개정] 제24조 (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일 평균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 또는 외래환자 5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2. 조산원은 산부인과를 둔 의료기관에 두되, 그 정원은 제3호의 간호원정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3. 간호원은 1일 평균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 또는 외래환자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 의사, 간호사 정원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자료) >

- **의사 정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치과의사, 한의사 정원** : 의사의 경우와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
- **간호사 정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조산사 정원**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 (참고) 의료인력 산정 예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외래환자 90명을 진료하는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정원

① 의사(4명) : 입원환자 $[40 \div 20]$ + 외래환자 $[(90 \div 3) \div 20] = 3.5$ 명(소수점 올림)

② 간호사(19명) : 입원환자 $[40 \div 2.5]$ + 외래환자 $[(90 \div 12) \div 2.5] = 19$ 명

□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등의 경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상한기준을 정하고, 전공의 담당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별 특성, 전공의의 수련단계별 수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공의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질병·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전공의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전공의의 근무여건 개선과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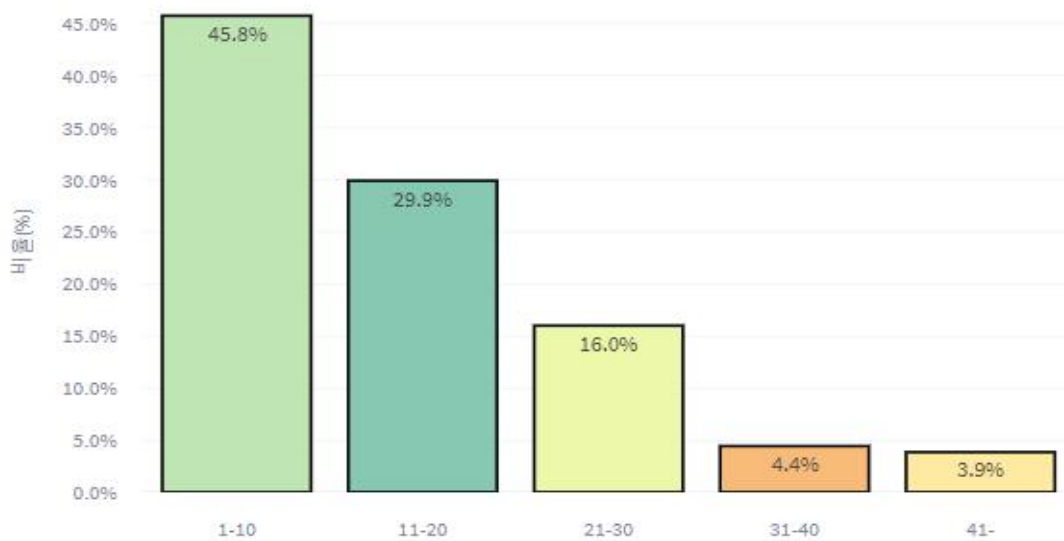
또한, 전공의 인력기준 규정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인력기준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수련환경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련병원등을 대상으로 법 제9조의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준수 여부, 제13조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수련 교과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의무적으로 공표됨.⁶⁾

-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⁷⁾에 따르면, 전공의가 정규 근무 시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입원환자(응급환자 포함)의 하루 평균 인원은 1~10명이 45.8%로 가장 많았으나, 3.9%는 41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규 근무 시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 >

정규 근무 시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입원 환자(응급 환자 포함)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입니까?



담당 환자가 없는 전공의는 제외되었습니다.

- 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7) 2022.11.16.~2022.12.14. 전공의 13,350명 대상 설문 진행, 응답률 14.8%(1,984명 응답)

□ 전공의 1인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담당 환자수가 증가할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자명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도 연결되므로 과중한 업무부담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수련환경평가위원을 지낸 한 전공의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량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오히려 전공의 한 명이 맡고 있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며,⁸⁾ “각 전문과목 학회에서 환자 안전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수련환경평가 지표에 전공의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⁹⁾

- 또한, 과도한 업무량은 전공의 교육수련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신현영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주최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문에 따르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모두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교육수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공의 1인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전공의에 대한 자료는 아니지만, 의료인력 관련 연구들에 서는 적정 의사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문가의 판단, 의사수입의 평가,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수준

8)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병원 수련환경 평가” 설문조사에서 야간 당직 근무 시 전공의 1명의 담당 환자수는 평균 7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임.

9) 이승우, “전공의법 시행 이후 3년, 젊은 의사들의 수련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의료정책포럼 제17권제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19

의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시장의 현상 중 의료이용 현황 자료로서 의사 1인당 진료건수 또는 외래 진료 환자수 등을 참고하기도 함.¹⁰⁾ 2023년 기준 한국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가 6,755건으로 OECD 평균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¹¹⁾ 기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활동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량(진료건수)을 52.14 또는 45.76로 제시한 바 있음.¹²⁾

-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통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유형별 적정 환자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2호, 김윤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보건의료인력에는 전공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등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및 관련 직종 단체 등 현장 의견, 유사 사례, 일률적인

10) 의료정책연구원,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2023.11.

11) 「OECD. Health at a Glance 2025」,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2010.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 2011.

규제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법적 규제보다는 각 전문학회가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대한의학회) 환자 수 제한은 증례 경험 축소 및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 (대한병원협회) 수련과정상 요구되는 적정 임상경험 제한 우려, 의료현장에서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필요. 또한 수련병원 등의 환자 수용 구조, 인력 운영, 수련 역량 등에 직결되는 규제이므로, 주요사항은 하위법령 위임보다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필요
-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본적으로 찬성함. 다만 대체인력 배치 사유의 범위 확대 등 일부 보완 필요

3.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 비용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러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26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 ④ (생략) <신설>	법률 제2126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병원등의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지도전문의’란 전공의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¹³⁾를 말함.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 국회는 2025. 12. 30.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할 바 있고, 동 조항은 2026. 12. 31. 시행될 예정임.¹⁴⁾

□ 개정안은 이러한 지도전문의 제도의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은 이미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¹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0.>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12. 30.>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0.>

[시행일: 2026. 12. 31.] 제12조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도전문의
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
급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 사업’의 내내
역사업으로, 2026년의 경우 총 970억 6,900만원이 반영되었음.¹⁶⁾

< 2026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집행항목 >

구분		세부내용
지도전문의 수당		- 책임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등
전공의 교육운영	전공의 교육·연구 활동	- 국내외 연수 관련 학회 등록비 및 숙박·교통비 등 여비 - 전공의 임상술기 교육 등록비 - 논문 등재 관련 게재료 및 교정료 - 저널 및 전공도서 구독료, 구입비 등
		- 전공의 워크숍, 집담회, 간담회, 의학교육 특강 등 집단교육 및 행사와 개별 면담 등을 위한 기본 경비, 강연료, 강의료, 대 관료 등
	기타비용	- 수련위원회 운영 관련 기본 경비 등 - 수련교육부서 행정인력, 진료과에 배치되는 전공의 수련 관련 코디네이터 등 인건비 또는 수당 - 지도전문의 수련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의 추가 채용 인건비 - 전공의 수련 관련 물품 구입 등 행정 운영비 등 ※ 위 항목 이외의 항목은 예산 집행계획에 사업과의 관련성 등 세부 내용 증빙 후 집행(수행기관 사전 협의)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2026.3.)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6)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97,069,000천원)

- 수련비용 지원 95,430,000천원 : 3,181명×30백만원
-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 1,139,000천원 : 2,278명×0.5백만원
- 사업운영비 : 500,000천원

- 동 사업 참여기관은 유형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역할 부여에 따른 지도전문의 수당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단가는 자율적으로 산정하되 책임지도전문의는 월 400만원 이상,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월 125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이 권장됨.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개정된 법률 조항의 시행과 별개로 동 사업에서 지도전문의 등 운영인력 구성과 역할을 세분하고 있음.

< 지도전문의 등 운영 인력 구성 >

구분	주요 역할
책임 지도전문의	·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책임자 ·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질 관리, 전공의 평가 등 총괄 · 전체 업무 중 40~50% 이상을 수련 관련 업무에 할애 · (선택)부책임지도전문의 : 전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임지도전문의 위임 하에 보조 및 역할을 분담
교육전담 지도전문의	· 전공의 밀착 지도(교육·평가·피드백)를 전담하는 주 교육자 · 개별 전공의에 대한 담임 역할로 임상지도, 세부분과 의학지식 등 지속적·정기적 교육과 지지체계 제공(1인당 전공의 3명 이하 담당) · 전체 업무 중 15% 이상을 수련 관련 업무에 할애
그 외	· 수련병원 총책임자 : 해당 수련병원을 대표하여 수련 총괄 및 대외 협력 담당, 수련병원 차원의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전반 감독 · 수련교육부서 행정 담당자 :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및 본 사업 관련 일정 관리, 문서작업, 예산 지원 등 행정적인 업무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2026.3.)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대한병원협회) 국고지원 의무화로 변경 필요, 지원대상, 범위, 기준 등 구체화 및 필수의료, 지역·중소 수련병원 등에 대해 우선지원 또는 차등지원 방안 검토 필요

4. 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및 이동수련 조치 사유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사유로 “수련시간, 임신부 보호 등 이 법에서 정한 전공의의 근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이동수련 조치의 사유로 “수련병원등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한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8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26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법률 제2126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수련시간, 임신부 보호 등 이 법에서 정한 전공의의 근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u>

8. (생략) ③ (생략)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① ----- ----- ----- ----- ----- ----- ----- ----- -----하되, 제3호에 따른 신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수련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수련병원등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한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1) 수련병원등 지정 취소 사유 추가

□ 현행법(법률 제21267호, 2026. 12. 31. 시행예정 조문 포함)은 제7조 및 제8조 등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⁷⁾

1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4. 2. 20., 2025. 12. 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2025. 12. 30.>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신설 2025. 12. 30.>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 12. 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5. 12. 30.>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25. 12.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8조의2(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질병·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¹⁸⁾

[시행일: 2026. 12. 31.] 제8조의3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8조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8조의2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7.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8. 제1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9.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10.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 12. 30.>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이하 생략)

[시행일: 2026. 2. 21.]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시행일: 2026. 12. 31.] 제19조

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5. 12.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전공의 근로기준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과 별개로 곧바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3조제2항이 제3호에서 일반적인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병원등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호(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위반), 제5호(이동수련 조치명령 위반) 및 제6호(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전공의의 근로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전공의의 근로기준은 교육생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를 과도한 근무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피로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련병원등이 준수하여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전공의 근로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예컨대, 현행 규정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

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에 도달하여야 지정취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수련시간, 임산부 보호 등 이 법에서 정한 전공의의 근로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위반 시 지정 취소될 수 있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이동수련 조치 명령 사유 추가

- 한편, 현행법은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수 있는 사유로 “수련병원등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한

1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절차·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동수련)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전공의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수련병원등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 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²⁰⁾

이에 비추어 볼 때, 수련병원등의 장의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전공의를 보호하는 것은 전공의의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환자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²¹⁾

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하 생략)

※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개정안은 제13조의2제1항 후단을 개정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동수련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수련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신고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이 판단할 사항인바, 이를 수련병원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행정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해당 신고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령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행정청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13조의2제1항 후단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대한병원협회) 지정취소는 강력한 제재조치이므로 제재조치의 요건 명확화, 위반 시 단계적 제재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며, 과도한 하위법령 위임 등 지양 필요. 한편, 이동수련 조치와 관련하여 허위·부당 신고의 판단 주체·절차·기준, 전공의 임시보호조치, 당사자 의견제출 및 소명기회 등 명확히 규정 필요

5. 협력수련체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과 인접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3(협력수련체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련병원등 외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인접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수련체계(이하 “협력수련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수련체계는 「필수의료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수련체계에 참

	<u>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협력수련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재 전공의 대부분이 고난이도·중증환자 위주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고 있어, 지역·일차의료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²²⁾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공의 수련을 위해 수련병원 외의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수련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약 70%의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경험이 중심이므로 세부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워 다양하고 폭넓은 진료역량을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17년 대한의사협회의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수련과정 불만 사유 중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라는 답변이 60.2%로 1순위를 차지한 바 있음.

22) 2024년 전공의 수련비중: 상급종합병원 66.5%, 700명상 이상 대형병원 75%

- 따라서 타 기관 간 협력수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폭넓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수련’ 및 ‘모자수련’ 등 전공의 파견수련 제도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²³⁾ 등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시범사업 평가 이후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대한의사협회) ‘수련 질 보장’이 아닌 ‘인력 충원’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하며, 현행 지역거점 수련병원의 자체 역량 강화 필요
- (대한병원협회)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충분한 검토 후 논의 필요하며, 현행 파견수련 제도와의 관계 정리 필요
-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 질 훼손, 지역 수련병원 지원 기피 가속화 등으로 지역 수련격차 악화가 우려됨. 협력수련 체계 도입보다는 지역거점 수련병원의 수련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 필요

23) 상급종합병원과 그 외 의료기관(비수련병원 포함) 간 전공의 파견수련을 통해 다양한 임상사례 등 경험

6.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운영과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²⁴⁾
-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 등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공개토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15., 2025. 12. 30.>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 3의2.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 3의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조치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3의4. 수련병원등의 제7조 및 제8조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관한 사항
-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0.>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명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3명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고등교육법」의 대학평의위원회 등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한 유사 입법례가 존재함.²⁵⁾

□ 다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회의 내용에는 수련병원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 전공의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의 사후 보고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수련병원등의 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25)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⑥ 대학평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5조(회의)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장소, 안전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²⁶⁾ 다만, 모든 발언을 그대로 기록하는 속기 형태가 아니라 회의의 주요 내용(보고사항, 심의사항, 논의결과 등)을 요약한 형태의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 평가와 제재 등에 직결되는 민감한 판단을 수행하고 있어, 회의록 작성 및 공개가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심의 등에 영향을 미쳐 위원회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6)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7. 전공의 수련교육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전공의 수련교육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원(이하 “수련교육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수련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개선 연구 2. 전공의 수련기관 및 수련프로그램 평가·연구 3. 지도전문의 등 전공의 수련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4. 전공의 수련 관련 통계 분석 5. 그 밖에 전공의 수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련교육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단체를 수련교육원으로 지정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수련교육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u>기관·단체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⑥ 수련교육원의 조직·운영 및 지정,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원(이하 “수련교육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련교육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개선 연구, 전공의 수련 기관 및 수련프로그램 평가·연구, 지도전문의 등 전공의 수련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전공의 수련 관련 통계 분석, 그 밖에 전공의 수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단체를 수련교육원으로 지정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수련교육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재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은 각 수련병원에 일임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있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15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련교육원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설치되며,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⁷⁾

- 개정안의 전공의 수련교육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²⁸⁾와 차이

27)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③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있음. 또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임.²⁹⁾

□ 둘째, 개정안은 제15조의2제1항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관계 기관·단체를 수련교육원으로 지정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수련교육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개정안은 수련교육원의 운영 방식을 ① 소속기관 방식, ② 외부기관/단체 지정 방식, ③ 외부기관/단체 위탁 방식 등 3가지 방식을 함께 상정하고 있는데, ①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는 것이고, ② 또는 ③의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그 구성 및 업무수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격이 다른 세 방식을 혼용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법률에서 하나의 방식을 택일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 셋째, 개정안 제15조의2제3항은 수련교육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나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대상이라는 점에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넷째, 현행 또는 시행예정인 규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현행 「의료법」은 전문의가 되려는 자의 자격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³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시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총칙,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요한 공통 역량, 인턴수련 교과과정, 각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이 기술되어 있음. [참고자료]

- 현행 제12조의3은 지도전문의에 대한 의무적 교육을 규정하면서 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에서는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주기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30)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수련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시에서는 이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 의학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³¹⁾

- 현행 제1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환경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조는 전공의 수련과정 및 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³²⁾

3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초교육
-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 1)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기초교육: 4시간

나. 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4조(지도전문의 교육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및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3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

- 2026.12.31. 시행예정 법률 제21267호 제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전공의종합계획에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역량중심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6.12.31. 시행예정 법률 제21267호 제18조에서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³³⁾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대한의사협회) 취지에는 찬성하나 현재 전공의 수련이 일선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단체와의 중장기적 논의 필요

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 3의2.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3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현황 관리
- 2의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4.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5.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6.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시행일: 2026. 12. 31.] 제18조

- (대한의학회) 행정체계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이나, 복지부 소속 또는 위탁 구조에서는 실질적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대한병원협회)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위탁체계를 유지·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의 수련교육원을 설치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현행 유지).
 - 현행 전공의법은 이미 보건복지부장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각각 수련환경평가의 실시와 최종 책임,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실무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수련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수련과정 연구, 수련환경평가체계 개선, 지도전문의 교육 및 수련 관련 통계 분석 등 개정안이 수련교육원에 부여하려는 기능은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제18조에 따른 위탁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수행할 수 있음.
 - 별도의 수련교육원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현행 수련관리체계와 기능·권한이 중복되고, 평가와 정책결정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며, 행정 의사결정의 지연 및 조직·예산의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다만,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수련교육원 설치가 계속 검토되는 경우, 현행 수련관리체계와의 충돌 및 행정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과 책임, 평가업무의 범위 및 기존 위탁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설 필요성에 공감. 다만 독립성 보장 규정 강화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의 유기적 연계 체계 규정, 전공의 직접 참여 등 명문화 필요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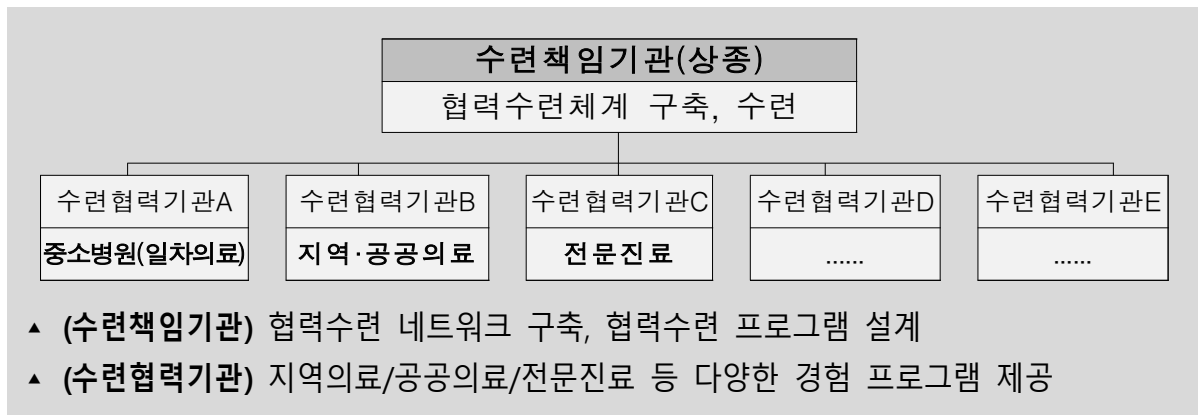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개요

□ 개요

- 전공의들이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체계(네트워크) 구축
-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체계 개편과 연계한 수련체계 구축 목표

□ 사업내용

- (협력체계 구성)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급종합병원 등이 수련거점 역할을 하면서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



- (협력수련 프로그램) 협력 네트워크별 다양한 중증도 환자의 진료 프로그램 구성, 중소병원, 전문병원, 지역의료원 등에 파견

* (분야) 지역의료, 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수련교과과정 강화 등

□ 지원내용

- 시범사업 예산(11억원) :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비(협력수련 네트워크별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및 선도형 네트워크 선발*) 지원

* 사업평가 등을 통해 '다기관 협력수련 우수모델'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 수련책임기관에 전공의 정책적 별도정원 배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금 지원('27)

□ 모자(母子) 수련 제도

- **(목적)** 수련병원 간 모자 협약 체결 및 파견 수련을 실시하여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임상사례 등 경험 제공
- **(현황)** '26년 기준 모병원 30개소, 자병원 89개소
- **(역할)** 모병원은 자병원 정원을 포함하여 전공의 선발·관리, 파견 계획 수립 및 자병원에 전공의 배치, 모병원 근무 전공의 지도·감독
 - 자병원은 모병원에서 파견받은 전공의를 지도·감독
- **(파견기간)** 1회 6개월 이내, 자병원 파견수련 기간은 전공의의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통합수련 제도

- **(목적)** 수련병원들이 하나의 병원군을 형성하여 전공의를 공동 모집·선발·수련함으로써 수련 질은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 제공
- **(현황)** '26년 기준 통합수련군 3개(가톨릭중앙의료원-8개소, 고려대의료원-3개소, 강원대병원-삼척·속초의료원)
- **(내용)** 전공의 모집은 통합수련군이 공동 실시하되 전공의별로 주 교육(대표)병원 지정
 - 주교육병원을 모병원, 통합수련군 내 다른 수련병원(참여병원)을 자병원으로 간주해 순환근무 계획 수립
- **(순환근무 기간·인원)** 기간과 형태는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모자수련의 파견기간·인원에 준하여 운영

제 1 장 총 칙

1.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수련상황은 각 수련병원등의 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의학회 산하 수련교육위원회 및 각 전문학회가 주관하여 인턴 및 수련전문과목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한다.
2.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수련함에 있어서 모자결연병원 혹은 통합수련병원에서 인턴의 경우 1년 미만, 레지던트의 경우 6개월 미만을 수련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나. 가목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2 장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요한 공통 역량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 다음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역	세부 주제	각 항목별 역량
1. 존중(Respect)	1. 타인존중 (Respect for Others)	• 환자의 권리 및 보호(신체접촉, 성관계금지) • 타 직종에 대한 존중 • 환자차별금지 • 동료의사보호
	2. 자기존중 (Respect for Self)	•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방지
2. 윤리(Ethics)	3. 의료 윤리	• 생명의학 윤리원칙 • 비밀보호 및 준수 의무

영역	세부 주제	각 항목별 역량
		• 임상연구 윤리 • 영리보건의료회사 등과의 이해상충 • 임종기돌봄 및 연명의료의 윤리
	4. 의료 법규	• 보건의료 관련법규
	5.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 효율성(efficiency) • 공평성(Equity)
3. 환자안전 (patient Safety)	6. 환자 안전	• 환자 안전의 개념 • 위기관리(Managing risk) • 인적 요소와 체제적 접근 • 감염(Infection)관리 • 다양한 질 개선 관리
4. 사회(Society)	7. 사회 및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	• 건강보험체계,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요구의 이해 • 다양한 의료 관리에 대한 이해 • 지역보건의료 단체와 재원에 대한 이해 •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 • 보건의료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 • 의학과 문학, 예술, 여론, 대중매체에 대한 소양 및 이해
5. 전문성 (Professionalism)	8. 전문가적 진정성 (Professional integrity)	• 조직프로페셔널리즘 • 사회적 책무성
	9. 자기관리 (Self management)	• 의사의 안녕(physician wellbeing) • 자기통제/스트레스 관리 • 평생경력관리
6. 수월성 (Excellence)	10. 일반임상역량 (Generic clinical competence)	• 정확한 환자상태 평가: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 적절하고 온정적인 태도 • 임상술기 수행능력 • 근거중심의 진료 • 전인적, 포괄적 진료 (인간심리, 행동, 가족 등에 대한 이해)
	11. 자기 계발 (Self development)	•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평생 학습 태도 • 교육자로서의 진공의 • 연구 설계 및 논문작성기술
7. 의사소통 (Communication)	12. 의사소통(Communication)	•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기술 • 동료, 보건의료팀,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 질환교육 및 정확한 정보제공
8. 팀워크 (Teamwork)	13. 협동(Collaboration)	• 동료 의사와의 팀워크 • 타 직종과의 팀워크 • 인접의료 종사자에 대한 이해
	14. 리더십(Leadership)	• 전문가적(professional) 리더십 • 사회적/글로벌(social/global) 리더십

제 3 장 인턴수련 교과과정

구분	내 용	
교육목표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과정으로서,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의사로서 품위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과정	인턴교육은 각과 과장의 감독과 지도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의 지도하에 주로 병실 및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기재, 진찰, 처치, 수술 등 진료전반에 관한 임상수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인턴은 근무 중 각 과의 교육행사 및 병원의 필수적인 교육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인턴의 수련은 순회제를 원칙으로 하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포함, 다음과 같이 수련하여야 한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각각 4주 이상(실수련일 기준 18일 이상) 필수적으로 수련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의 과목은 선택으로 하되 적어도 2개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과	획득 핵심역량
	내과	1. 내과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2. 발열, 구토, 복통, 기침, 호흡곤란, 흉통, 빈혈 등 비교적 흔한 내과적 증상 소견에 대한 일차 진료와 그에 따른 기본적 처치를 할 수 있다. 3. 응급 상황과 중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병력 청취 및 처치를 할 수 있고 수혈 및 심폐 소생술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과	1. 외과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2. 외과 환자에 대한 수술 직후 열, 수술부위 통증, 수술상처에 대한 일차 진료 및 그에 따른 기본적 처치를 할 수 있다. 3. 외과 수술실 일반적인 수술 준비, 수술보조, 피부 상처 봉합을 할 수 있다. 4. 외과 환자에 대한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일차 진료와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산부인과	1. 산부인과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의무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2. 산부인과 병동 환자의 수술 후 드레싱, 심전도, 채혈 등 기본적 처치를 할 수 있다. 3. 산부인과 수술에 참여하고 기본적인 수술준비 및 술기를 시행할 수 있다. 4. 산부인과 분만 및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분만 및 수술 관련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분만 진행에 따른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처치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1.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의무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2. 발열, 구토, 경련 등 비교적 흔한 소아청소년의 응급 상황에 대한 일차 진료와 그에 따른 기본적 처치를 할 수 있다. 3. 소아 청소년의 일반적인 상기도 감염에 대한 일차 진료와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 4. 소아환자의 진정 처치 시 환자 이송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지도전문의의 교육 후 전공의 독자 수행 권장 술기> 1) 외래 및 병동 환자(성인, 소아 및 응급환자 포함)의 기초 병력 청취 및 신체 진찰 2) 환자 상태 보고하기, 의무기록 작성, 동의서 받기 3) 기본 심폐 소생술, 한국 전문 소생술, 중환자 이송, 진정관리 및 모니터링 4) 동맥혈 및 정맥혈 채혈, 혈액 배양, 말초 정맥 주사 5) 심전도 검사 6) 정신 상태 검사 및 자타해 위험성 평가 7) 비위관 삽입 및 위세척술, 요도관 삽입 및 방광 세척술 8) 직장관 삽입, 장루 관장법 9) 복수 천자	

	10) 수술보조, 기본 봉합술 11) 단순 소독, 절개 배농술 중심정맥 카테터 관리 12) 경비기관흡인술 13) 수혈환자 관리 14) 태아 안녕평가 15) 부목술, 도수 정복술의 보조 경우에 따라 위에 언급되지 않은 술기도 지도 전문의 혹은 상급전공의의 지도 감독 하에 시행할 수 있다.
특례	예방의학과 전공의의 인턴 수련은 인턴수련 인정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중 1년간의 임상경력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 4 장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각과정)

1. 내과

1) 교육목표

구분	내 용
전공의 교육 미션	역량 중심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과 질환에 대한 통합 진료능력을 갖추고, 진료 및 예방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보건향상에 능동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내과전문의를 양성한다.
전공의 교육 비전	내과전문의로서 가) 내과 질환에 대한 진료와 술기 능력을 갖춘다. 나) 내과 영역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다) 자기 주도 학습과 평생 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라) 건전한 의료 및 연구윤리의식을 갖춘다. 마)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연차별 교과과정

연차	구분		내 용
1	환자취급범위		퇴원환자 600명 (1년차 및 2년차 통합) (중환자실 환자 50명 및 응급실 환자 50명 포함) 소화기 100명, 순환기 100명, 호흡기 80명, 신장 60명, 내분비-대사 60명, 알레르기 30명, 혈액 30명, 감염 40명, 종양 30명, 류마티스 30명, 기타 40명
	교과 내용	연차별목표	1. 내과 의사 공통 및 전문역량 2. 입원 환자 진료
		임상수기	1. 일반내과적 문진, 신체검사, 신경학적검사 및 검사실 소견의 해석 능력 향상 2. 일반진료수기의 습득 (20건 이상) (흉강, 복강, 심낭, 척수, 관절 등의 천자 및 중심정맥관 삽입 등)
		검사 및 술기	1. 기본 심전도 판독 2. 흉부 및 복부 X선 영상 이해 능력 양성 3. 각종 영상검사 (CT, MR, Angiography 등) 결과의 이해와 활용 능력 양성 4. 각종 초음파검사의 일반적 이해 5. 각종 내시경 검사의 일반적 이해
		교육자적 자질	1. 입원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시 학생과 인턴 지도 2.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 역량
2	환자취급범위		퇴원환자 600명 (1년차 및 2년차 통합) (중환자실 환자 50명 및 응급실 환자 50명 포함) 소화기 100명, 순환기 100명, 호흡기 80명, 신장 60명, 내분비-대사 60명, 알레르기 30명, 혈액 30명, 감염 40명, 종양 30명, 류마티스 30명, 기타 40명
	교과 내용	연차별 목표	1. 전문역량 완성 2. 중환자 및 응급 환자 진료
		임상수기	1. 특수검사의 수기 습득과 판독력 배양 2. 장기 및 조직 (골수 등) 생검 및 판독

연차	구분		내 용
		검사 및 술기	<2년차 및 3년차 통합 건수> 1. 각종 장기기능 검사 80건 이상 (폐, 심, 신, 내분비, 간, 면역, 핵의학검사 등) 2. 각종 영상검사 (CT, MR, Angiography 등) 결과의 이해와 활용 능력 양성 3. 수련 기간 중 각종 초음파 검사(복부, 갑상선, 골관절 등) 참여 50건 이상 4. 수련 기간 중 심초음파검사 참여 50건 이상 5. 수련 기간 중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 이상(위장관, 기관지 등)
		교육자적 자질	1. 입원 환자의 진단 및 치료시 학생, 인턴, 저년차 전공의 지도 2.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 역량
		연구역량	임상연구 역량 배양 (지도전문의의 임상연구 참여하여 간접적인 경험 혹은 직접 임상연구 참여)
3	환자취급범위		외래환자 200명 이상 소화기 50명, 순환기 30명, 호흡기 30명, 신장 10명, 내분비-대사 20명, 기타 60명 (알레르기, 혈액, 감염, 종양, 류마티스, 기타)
	교과 내용	연차별목표	1. 환자 진료의 책임자 2. 외래 환자 진료
		임상술기	1. 타과 및 내과 내 협진 100건 2. 고급 술기의 습득과 판독력 배양
		검사 및 술기	<2년차 및 3년차 통합 건수> 1. 각종 장기기능 검사 80건 이상 (폐, 심, 신, 내분비, 간, 면역, 핵의학검사 등) 2. 각종 영상검사 (CT, MR, Angiography 등) 결과의 이해와 활용 능력 양성 3. 수련 기간 중 각종 초음파 검사(복부, 갑상선, 골관절 등) 참여 50건 이상 4. 수련 기간 중 심초음파검사 참여 50건 이상 5. 수련 기간 중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 이상 (위장관, 기관지 등)
		교육자적 자질	1. 입원 환자 진료 지도(학생, 인턴, 저년차 전공의 등) 2. 타 의료인 교육 3. 환자 및 보호자의 교육
		연구역량	임상연구 역량 배양 (지도전문의의 임상연구 참여하여 간접적인 경험 혹은 직접 임상연구 참여)
총계	환자 취급범위	1. 퇴원환자 600명 이상(담당의로서 취급한 환자) 2. 외래환자 200명 이상 3. 협진 100건 이상 4. 핵심역량 수행평가 완수 (퇴원 및 외래 환자 인원에는 각 분과별 핵심역량 수련 및 이수와 관련된 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학술회의 참석	1. 외부 20회 이상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 참석 포함) (오전 및 오후 각각 1회로 산정) 2. 원내 300회 이상 (수련기간 중) 3. 윤리집담회 참석 (전체 수련기간 동안 대한내과학회 주관의 춘, 추계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하고, 수련병원 원내 윤리집담회에 연간 최소한 2회 이상 참석) 1) 대한내과학회 주관 윤리교육: 3년 중 2회 이상 - 춘계학술대회: 핵심역량 연수강좌 중 '윤리교육' 이수 - 추계학술대회: '윤리 심포지엄' 이수 2) 수련병원 원내 집담회: 연간 최소 2회 이상 (총 6회 이상) - 원내 윤리집담회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사이버 윤	

연차	구분	내 용
		리교육' 전반부 및 후반부를 이수한 경우 수련기간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총 6회 중 2회 인정
	논문 제출	논문 1편(주논문) (수련기간 중) 수련개시일로부터 응시자격 심사 전까지 인정학술지에 논문 1편(원저, 제1저자) 투고 및 게재 또는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1저자 포스터, 포스터구연 발표
	기타 요건	각 분과의 핵심역량을 수련하고 이수하는 데 있어 각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분과, 설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파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내과 영역의 부족한 분과에 대한 파견 프로그 램 기간은 최소 4주로 한다.
비고		1. 타과 근무의 경우 해당과장의 파견근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수련병원에서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이 완비된 병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무 해야 하며, 파견병원의 해당과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취급범위 항의 취급건수의 연차별 배분은 수련병원 사정에 따라 총수의 범위 내에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 전공의는 각 연차별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수련병원의 여건 및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 여 이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5. 학회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수련병원을 참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조정할 수 있다. 6. 모자병원의 경우 자병원에서의 수련 교육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7. 1-2년차 전공의 수련 기간 중 특정 분과나 특정부서(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다. 중환자실 근무 시 분과별 중환자 권장질환은 다음과 같다.
	분과명	중환자 권장질환명
	소화기	스트레스성 궤양, 급성 장관막 허혈, 중증 급성췌장염, 혈역학적 불안정을 동반 하는 위장관 출혈, 간부전
	순환기	급성심근경색증, 급성 심부전, 대동맥 박리, 완전방실차단, 심실빈맥, 심실세동
	호흡기	기도질환의 급성악화, 간질성폐질환의 급성악화, 폐색전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심정지후 관리
	내분비 -대사	급성고혈당 합병증(당뇨병성 케톤산증,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 저혈당 쇼크,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장	급성신손상 3기(CRRT 치료 등), 일반치료에 반응 없는 전해질이상(고칼륨혈증, 고나트륨혈증 등), 일반치료에 반응 없는 산염기이상(중증 대사성 산증)
	혈액종양	호중구감소 발열/패혈증, 종양용해증후군, 척수압박
	감염	패혈증과 패혈성쇼크, 침습적 진균감염증, 카테터 관련 감염
	알레르기	천식의 급성 악화, 호산구성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척-스트라우스증후군), 과다 호산구증후군 등 호산구 관련 질환의 급성 악화, 아나필락시스, 스티븐스존슨증 후군,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 등 중증 약물유해반응
류마티스	중추신경계 전신홍반루푸스, 폐동맥고혈압을 동반한 전신경화증,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 질환	
		8. 초음파검사와 내시경검사에 대한 수련은 주로 3년차에 시행하지만 수련병원의 상황에 따라 2년차부터 일정을 반영할 수 있다. 9. 각종 초음파 검사 참여는 1) 각 수련병원이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2) 대한내과학회 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에 전체 수련 기간 동안 3회 이상 참여한 경우 대체 인정한다. 10.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